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 복제권과 전송권을 중심으로 -

Copyright Issues for Distance Learning Library Services Focusing on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Right of Communication

김현희(Hyunhee Kim)**·정경희(Kyunghee Jung)***

<목 차>

- | | |
|--------------------|-----------------------|
| 1. 서론 | 4.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저작권 문제 |
| 2. 원격교육과 저작권 | 5. 결론 |
| 3. 원격교육과 도서관 정보서비스 | |

초 록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와 도서관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은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기존의 면대면 교육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였다. 또한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 중 전자지정도서 세 운영, 전자적 도서관상호대차 및 전자적 문헌전달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원격교육, 저작권, 저작권 제한, 도서관면책, 전송권, 복제권, 전자지정도서제, 전자도서관상호대차, 전자문헌전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pyright problems in the course of distance learning. The Copyright Act of Korea is built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However, for efficient use of library's materials for distance education, some article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is needed to be changed. We suggested the revision in the article 23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and the article 28 "Reproduction in Libraries, etc."

Key Words : Distance Learning, Limitations to Authors' Property Rights, Reproduction in Libraries,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Electronic Reserve, Electronic Interlibrary Loan,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05-C00004)

** 명지대학교 교수(kimhh@mju.ac.kr)

*** 중앙대학교 강사(libinfo@cau.ac.kr)

· 접수일 : 2002. 2. 7 · 최초심사일 : 2002. 3. 7 · 최종심사일 : 2002. 3. 14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디지털 원격교육은 강의실 중심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보완하거나 일부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형태로써 최근 몇 년간 교육분야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저작물의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저작권법과의 연계성을 의미한다. 특히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자료의 이용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에서 복제권 및 전송권과 관련한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주된 관심은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국내 저작권법¹⁾은 제5절 '저작재산권'에서 복제권(제16조)²⁾ 및 전송권(제18조의 2)³⁾을 비롯한 일련의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⁴⁾ 및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⁵⁾ 등의 저

1) 대한민국 저작권법(2000. 1. 12 일부개정) 법령 제6134호

2)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5절 저작재산권 제16조 (복제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3)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5절 저작재산권 제18조의 2 (전송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2000. 1. 12 본조 신설)

4)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2000. 1.1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00. 1.12 개정)

5)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2000. 1.12 개정)

작권 제한 규정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의 권리를 확보해주고 있다.

특히 제23조와 제28조는 역사적으로 학교와 도서관이 담당해 왔던 지적재산에 대한 공중의 접근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역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기록의 관리인으로서 봉사하고, 교육과 학문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재산을 집중적·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역할과 표현의 자유, 탐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제한 없는 담론을 통하여 관심사를 공유하도록 하는 학교와 도서관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 의하여 초래된 정보의 생산, 배포, 접근 그리고 사용에서의 광범위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반면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학교와 도서관이 담당해 왔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역할을 네트워크 환경에서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저작권 법상 해당 규정의 한계를 제시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국내외 저작권법을 다른 문헌들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추출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원격교육과 기존의 면대면 교육상황과의 차이점 및 특징,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의 내용과 그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도출한 저작권 문제를 국내 저작권법 제6절 제23조와 제28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원격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중 이 논문에서는 전자지정 도서제 운영, 전자적 도서관상호대차 및 전자적 문헌전달서비스로 제한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로 제한하여 연구하였다.

-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2000. 1.12 개정)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설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자신의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0. 1.12 본항 신설)

2. 원격교육과 저작권

2.1 원격교육의 현황

원격교육의 역사는 1700년대 초엽 서신교환을 통한 교육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은 1900년대 시청각 장치가 학교에 도입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⁶⁾ 원격교육이란 용어가 학술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82년으로써, 국제통신교육협회(ICCE : International Council for Correspondence Education)의 명칭이 국제원격교육협회(ICDE : I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로 개칭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⁷⁾ 원격교육이라는 용어는 통신교육, 방송교육, E-Learning, 가정학습, 개방학교 등의 형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오늘날의 원격교육은 대체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 컴퓨터 기반 멀티미디어 교육(CBME : Computer Based Multimedia Education), 인터넷 기반 학습(IBL : Internet Based Learning), 웹기반 교육(WBI : Web Based Instruction) 등의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한 학습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다.⁸⁾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은 그 자체가 가진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 도구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⁹⁾ 첫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학습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은 정해진 같은 시간에 만날 필요가 없다. 즉 면대면이나 전화 커뮤니케이션의 실시간 상호작용과는 달리 컴퓨터 통신은 시·공간을 초월한 비동시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컴퓨터 통신은 많은 양의 최신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체제와 같이 외부의 정보습득에 뒤지기 쉬운 사회에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한다. 셋째, 컴퓨터 통신은 학생 개인이 교재를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 혹은 전문가들과의 정보나 의견교환, 토론을 통하여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지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컴퓨터 통신은 독특한 사회·심리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면대면 수업에서 얻기 어려운 긍정적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컴퓨터 통신공학은 전화나 화상회의 등

6) Michael Jeffries, "Research in Distance Education",
<http://www.ihets.org/consortium/ipse/fdhandbook/resrch.html> 2001. 10. 2)

7) 조영환,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중앙대학교, 2001. p. 10.

8) 최동근, 양용철, 박인우 공저, 『교육방법의 공학적 접근』. 서울 : 교육과학사, 1997. pp. 304-305.

9) 조영환, 앞의 책, pp. 26-27.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기술에 비해 비용효과 측면에서 우수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원격교육은 학습자가 원거리에 있어도 정해진 시간과 관계없이 컴퓨터와 통신설비만 갖추고 있다면 네트워크상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나은 학습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원격교육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인 가상대학(공식 명칭은 “원격대학”임) 설립에 관하여 평생교육법¹⁰⁾과 동법 시행령¹¹⁾, 동법 시행규칙¹²⁾이 그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은 2001년 현재 9개 대학에서 39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총 5235명이 수강하고 있다.¹⁴⁾

2.2 원격교육과 저작권

원격교육환경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은 첫째, 교육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강의에 이용하는 경우와 둘째, 교육자가 도서관의 저작물을 강의에 이용하는 경우 셋째, 피교육자가 강의에 사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넷째, 피교육자가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원격교육에 있어서 저작권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저작

10) 대한민국 평생교육법(2001. 1. 29. 일부개정) 법률 제6400호

11) 대한민국 평생교육법시행령(2001. 7. 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7296호

12) 대한민국 평생교육법시행규칙(2001. 1. 31.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13) 대한민국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은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 ③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농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4) 교육인적자원부: 원격대학운영현황

(http://www.moe.go.kr/bbs1/moebbs/bbs2%5F1%2D1482%2D2001%2D06%2D21%2D1%2Exls?download=bbs2_1-1482-2001-06-21-1.xls, 2001. 10. 12)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3권 제1호)

물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될 때 램에 의한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고, 네트워크에 의한 전송이 이루어지며, 만일 전송되어진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저장한다면 복제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과 제18조의 2 전송권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램 저장에 의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 제2조 14의 '복제'의 개념¹⁵⁾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복제권 적용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 다음에서는 저작권법에서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에 제한하는 조항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항이 원격교육 상황에 적용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2.2.1 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존의 저작물들이 교재나 기타 자료로 사용된다.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기관에서 방송 또는 복제하는 경우(저작권법 제23조 제2항)가 그것이다. 제2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초·중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며, 이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을 방송·복제할 수 있는 자는 위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그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도 본 조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업용 자료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한 유인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유롭게 방송·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은 문학·음악·미술저작물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나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된다. 또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저작물을 대출하여 수업용 자료로 방송·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법문상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제물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된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방송·복제만 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배포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공연·전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의 의미가 거의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 중에는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방송물을 공연·전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에 따라 교육자는 담당하

15)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4.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2000. 1.12 개정)

16) 오승종, 이해완 편집, 『저작권법』, 개정판. 서울 : 박영사, 2000. pp. 316-317.

고 있는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로 활용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구입하거나 혹은 도서관 대출을 통하여 입수한 뒤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교육자가 디지털 저작물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강의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인 동시에 전송이 수반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3조의 2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2000. 1.1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자에게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전송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전송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면대면 교육상황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제한되었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원격교육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들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¹⁷⁾의 경우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¹⁸⁾에서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용의 범주에 전송 등의 다른 저작재산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전송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¹⁹⁾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면제받는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전송을 포함시킴으로써, 디지털 원격교육상황에서도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1. 1. 16. 일부개정) 법률 제6357호

18)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1.16>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19) 정찬모, “디지털 원격교육과 저작권법 :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그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237(1999. 8), pp. 1-13 (<http://www.kisdi.re.kr/publishing/view.html?id=1801&db=kis> 05new, 2001. 10. 2)

2.2.2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

원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피교육자는 교육자가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또는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피교육자의 저작물 이용은 국내 저작권법 제27조²⁰⁾와 관련된다. 본 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규정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즉, 강의에 참석하는 피교육자가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특별한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본 조에서 사적이용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 권리는 복제에 대한 권리이므로 만일 강의자료로 활용되는 디지털 저작물을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강의에 필요한 디지털 저작물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이를 전송의 형태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27조의 권리제한 규정에 복제 뿐 아니라 전송에 대한 권리제한을 추가시킴으로써 비영리적 목적의 디지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2.3 원격교육에서 저작권법의 문제점

아날로그 환경의 면대면 교육에서는 국내 저작권법 제23조 2항에 근거하여 교육자들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용을 원격교육 환경에 적용한다면, 교육자들은 적법하게 입수한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강의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작권법상 '전송'²¹⁾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상 이용되는 자료일지라도 그것이 전송의 형태로 이용될 경우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원격교육일 경우 교육자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웹상에 올리거나 이용자들이 그 자료를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기

20)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 1.12 단서 신설)

21)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정의) 9의 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000. 1.12 본호 신설)

존에 제한되었던 저작자의 권리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교육자인 학생들은 그동안 강의실에서 교육자들이 제공하는 교육자료의 복제물을 받아보거나, 수업에 필요한 특정 자료를 교육자가 방송하거나 전시할 경우 이를 보거나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용 행태가 원격교육에 적용된다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자가 제시할 경우 학생들은 이를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상에서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보는 것은 전송 행위에 해당하며, 전송권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강의라는 제한적 환경에서 이용된다 하더라도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물리적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시킴으로써 교육자와 피교육자에게 부여되었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이 원격교육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격교육을 위한 저작권 면책 조항, 특히 저작권법 제23조의 2조와 제27조에서 전송권 제한 규정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원격교육과 도서관 정보서비스

도서관은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이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원격교육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도서관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001년 1월 29일 개정된 바 있는 국내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2조(원격대학의 교사·설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원격대학의 설비기준)에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설비”라 함은 별표 3과 같다”고 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본설비와 지원설비로써 “디지털도서관(문헌정보자료실)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규정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원격교육 환경에서도 전통적으로 도서관이 담당해왔던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지원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원격교육설비[22]

구 분	시 설 · 설 비 명	수 량 · 용 량		
기 본 시 설	하드웨어	강의서버 (웹·데이터베이스·브이오디(VOD)서버 등)	- 2중앙처리장치(CPU)급 이상 - 300메가헤르쯔(MHz) - 하드디스크드라이버(HDD) 90기가바이트(GB) - 주메모리(MM) 1기가바이트(GB) 이상	
		학사행정서버 (데이터베이스·메일서버 등)	- 2중앙처리장치(CPU)급 이상 - 300메가헤르쯔(MHz) - 하드디스크드라이버(HDD) 90기가바이트(GB) - 주메모리(MM) 1기가바이트(GB) 이상	
		백업용 데이터베이스서버	- 학사행정서버급	
		방화벽(Firewall)서버	- 1중앙처리장치(CPU)급 - 300메가헤르쯔(MHz) - 하드디스크드라이버(HDD) 10기가바이트(GB) - 주메모리(MM) 128메가바이트(MB) 이상	
		무정전전원장치(UPS)	- 30킬로볼트암페어(KVA)	
		멀티미디어 제작 장비	- 개인용컴퓨터(PC) / 매킨토시, 스캐너	
		프린터	- 흑백, 컬라	
		네트워크	내부망	- 광분산데이터인터페이스(FDDI) - 페스트 이더넷(Fast Ethernet) - 비동기시분할다중송신시스템(ATM) 등
			외부망	- T1급/E1급 이상
		모뎀(PPP)접속	- 100포트(port) 이상	
기 본 시 설	소프트웨어	웹엔진	- 웹서버 기능	
		데이터베이스	- 20사용자(Users) 이상	
		원격교육운영소프트웨어	- 학사관리 및 교안제작기능 데이터베이스 관리기능 등	
		방화벽(Firewall)소프트웨어	- 보안용 방화벽 소프트웨어	
		웹에디터	- 웹기반의 편집용 소프트웨어	
지 원 시 설	하드웨어	영상제작장비	- 동영상편집용 선형(Linear) / 비선형(Nonlinear) 시스템	
		음향제작장비	- 음향조정기, 앰프 등	
		보조기억장치	- 디스크어레이, 마그네틱테이프 등	
	소프트웨어	동영상서버	- 40 스트림(Streams) 이상	
		음향편집 소프트웨어	- 음향 편집전용 소프트웨어	
		동영상 그래픽소프트웨어	- 2차원/3차원 동영상 및 그래픽 가공 소프트웨어	
	기타	매체제작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디지털도서관(문화정보자료실)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 강의서버, 학사행정서버 및 백업용 서버는 각각 독립된 서버이어야 한다.

3.1 원격교육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교육기관의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는 그 기관의 모든 직원·교원·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이 캠퍼스 내에 있거나 캠퍼스 밖에 있거나, 혹은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교육형태이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의 형태이든 도서관 서비스는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ACRL(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은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1981년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원격교육지역에 있는 직원과 교원, 학생들의 도서관 자원 서비스 요구가 점차 많아지고, 정보전달과 강의내용 전달에서의 기술적 혁신, 전자적 형태의 대학 및 가상대학의 출현과 급속한 발전에 따라 2000년에 원격교육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Distance Learning Library Services)²³⁾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생이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와 상관없이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와 도서관 자원에 대한 접근은 고등교육에서 우수한 학술교육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며, 원격교육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전통적인 캠퍼스환경에 있는 학생이나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온 것과 동등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는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원에 있어서 모체기관은 전통적인 환경에서 제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도서관 자료에 대한 편리하고 직접적이거나, 전자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보장해야하며, 충분한 질적 수준, 수, 범위, 최신성을 갖춘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원격교육 커뮤니티에 제공될 도서관 서비스는 광범위한 정보적 요구, 서지적 요구,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고안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참고 서비스의 지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서지 및 정보적 서비스, 신뢰성 있고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공, 자문 서비스, 도서관 이용자지도 프로그램 개발, 비인쇄미디어와 장비의 이용에 대한 지도와 보조,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한 상호적 혹은 계약상의 대출 및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 급사 시스템이나 전자적 배달같은 즉각적인 문헌배달, 저작권 공정이용정책에 부응하는 저정자료(reserved material)에 대한 접근, 이용자에 의한 최적의 접근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시간 제공, 원격교육 커뮤니티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홍보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한국가상대학연합이 “98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계획서”에서 전자도서관이 강의에 필요한 멀티미디어형의 참고문헌과 자료학습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

23)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Guidelines for Distance Learning Library Services*, 2000. (<http://www.ala.org/acrl/guides/distlmg.html> 2001. 10. 8)

히 정보를 전자매체화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굴하고 학생과 교수가 강의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용자중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²⁴⁾ 즉, 가상공간에서 특정 교과목을 통해 교수와 학생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또, 생산된 보조자료는 참고문헌으로 학생들의 복습과 예습을 지원하는 학습체제가 되며, 멀티미디어 강의록과 어울려 새로운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자도서관의 자원은 원칙적으로 협력대학의 도서관 자원을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공동의 전자도서관을 구축한다. 멀티미디어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다수의 동시 사용자가 멀티미디어자료 검색이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를 갖춘 시스템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2 원격교육 도서관서비스에서 저작권 문제

그동안 도서관은 최초판매원칙²⁵⁾²⁶⁾에 근거하여 대출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며, 국내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의 1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었다.²⁷⁾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열람에 대한 권한을 저작자에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지정도서실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서비스는 물리적인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도서관 환경에서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서관 서비스는 원격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 환경에서도 여전히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 즉, 복제의 용이성, 대량 복제의 가능성 확대, 복제물과 원본간의 질적 동등성,

24) 한국가상대학연합, “98 가상(假想)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서”, 1997. 12.

(<http://www.kyungpook.ac.kr/kvu/proposal.pdf> 2001. 10. 4)

25)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3조 (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

①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26)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배포권을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43조에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 소진된다는 원칙이라고 하여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으로 불린다.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서울 : 박영사, 2000. p. 293)

27)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의 1 :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2000. 1.12 개정)

복제물의 조작·변경 및 통합 가능성, 네트워크를 통한 복제물의 광범위한 유포 등의 이유로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러한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위축시킨 바 있다.

즉, 2000년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복제의 개념에 디지털 복제를 포함시키고²⁸⁾, 전송권을 신설²⁹⁾하여 저작권자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반면 그에 대한 권리 제한은 매우 미미하여 그동안 제23조³⁰⁾를 근거로 가능하였던 학교교육 목적에 이용할 경우에 대한 저작권 제한과 제28조³¹⁾를 근거로 가능하였던 도서관 서비스는 오히려 축소되어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제4장에서는 도서관에서 원격 교육지원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전자지정도서제 운영, 상호대차서비스, 문현배달서비스로 제한하여 그 각각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4.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저작권 문제

4.1 전자지정도서제 운영상의 저작권 문제

지정도서란 대학 또는 학교도서관에 있어서 학기별 강의에 필요한 도서를 교수 또는 교사가 선정하여 강의 진행에 따라 학생들에게 단시간 대출 또는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서로서 일반도서와는 별도로 배가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³²⁾ 현재에는 전통적 도서관에서의 지정도서제를 원격교육상에 적용한 전자지정도서제(electronic reserved system)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되고 있다. 전자지정도서제란³³⁾ 비영리교육기관에서 특정 코스의 교육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자료를 축적·접근·전송·다운로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자료의 축적 즉,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다.³⁴⁾ 국립 도서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28)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4 복제

29)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8조의 2 (전송권)

30)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3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1)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32) 한국도서관협회, 문현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p.349.

33) Bruce A. Lehman, *The Conference on Fair Use : final report to the commissioner on the conclusion of the Conference on Fair Use*. Washington DC : Office of Public Affairs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998. pp.15-16.

법원도서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도서관 이외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또한 이용자가 디지털 형태로 축적해 놓은 자료를 원격교육과정에 필요하여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 구내로 직접 방문하여야만 가능하다.³⁵⁾ 즉, 원격지에서 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전자지정도서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해당 자료의 전송에 대한 허락을 저작권자에게 직접 얻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의 일부분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

원격교육시스템에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특정 코스에 필요한 자료를 전송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원격교육의 의미를 상실케하는 것이며, 그동안 도서관이 캠퍼스내 교육을 위하여 지원했던 서비스를 원격교육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6년 CONFU(The Conference on Fair Use) 회의 과정에서 전자지정도서제에 대하여 “전자지정도서시스템은 짧은 자료(저널의 논문 한편, 단행본이나 회의록의 한 장, 집합저작물에서 시 한편)나 보다 긴 자료(논문, 시, 단행본의 한 장 등이 하나의 책 저널 등이 길이정도가 되는 것)의 벌췌분을 포함하며, 해당 코스에 등록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제한방법으로 개별적인 패스워드 부여, 학생들의 등록상태점검, 코스번호나 교육자의 이름으로 자료를 검색하게 하는 등의 기술적 방법을 도입하며, 학생들이 전자적 지정도서에 직접적으로 혹은 특별히 접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³⁶⁾는 요지의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상당한 논의 후에 저작권자, 교육기관, 도서관 단체 대표들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으로 결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The University of Texas 도서관에서는 전자지정도서제에 대한 경험규칙(Rules of Thumb for Digitizing and Using others' Works in Electronic Reserves)을 마련하고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4원칙³⁷⁾ 하에서 이를 운영하고자 한 바 있다. 즉, 지정도서의 범위를

34) 대한민국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 법 제28조제1항 본문(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전문개정 2000. 7. 27]

35)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

36) *Fair-Use Guidelines For Electronic Reserve Systems*, 1996. 5. 5. 개정
(<http://www.utsystem.edu/ogc/intellectualproperty/rsrvguid.htm>, 2001. 10. 12)

저널에 수록된 한편의 논문 또는 단행본의 한 장, 몇 개의 차트나 그래프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기타 저작물의 작은 부분과 교직원 혹은 도서관이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한(구입, 라이센스, 공정이용, 상호대차 등) 자료 중 코스 복제물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의 작은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원본에 대한 저작권 사항의 공지를 해야하며, 해당 클래스에 등록된 학생들과 필요한 관리직원으로 접근을 제한시키며, 클래스의 종료시 접근을 종료시키고, 동일한 클래스에 대하여 동일한 교수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될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IUPUI)에서도 교육자가 전자지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그러한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³⁸⁾ 즉, 학생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수업자료를 전달할 때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이용 4원칙인 이용의 목적, 해당 저작물의 성격, 전체 저작물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양, 그러한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일한 저작물이 동일한 교육자에 위하여 반복되어 사용될 경우에 한해서는 저작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전자적지정도서로 사용될 자료는 해당 도서관이 반드시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다.

University of Utah의 Marriott 도서관은 전자지정도서정책³⁹⁾을 지정하여 해당 코스의 학생들에게 네트워크 아이디를 제공하여 전자지정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Marriott 도서관 역시 앞서 두 대학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전자적 지정도서제의 운영은 공정이용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The University of South Dakota의 도서관에서도 전자적 형태로 온라인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정도서제를 운영하고 있다.⁴⁰⁾ 인터넷에 접속된

37)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나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사용의 결정이라면,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38) <http://www.iupui.edu/%7Ecopyinfo/ereserves.html> 2002. 3. 18

39) Electronic Reserves Policies & Procedures for U. of U. Faculty Updated: July 27, 2000
(<http://www.lib.utah.edu/circ/reserve/fairuse.htm>, 2002. 3. 18)

40) <http://www.usd.edu/library/weeksres.html>, 2002. 3. 18.

어떤 컴퓨터에서, 언제라도 코스의 실라부스, 강의노트와 프리젠테이션자료, 저널의 기사, 도서의 장(chapters) 등을 전자지정도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포맷은 ASCII, TXT, HTML, PDF, JPEG, GIF, Microsoft Word, Excel, and PowerPoint 등 어떤 것이라도 사용가능하지만, 모든 자료는 공정이용의 4원칙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 사용에 대한 규정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저작권법은 전송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도서관 구내로 제한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공정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전자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도서관 상호대차는 협정을 맺은 도서관간에 소장자료를 서로 빌려주는 제도로써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서비스의 일종이다.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인쇄자료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권리소진의 원칙(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지켜왔다.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권리소진원칙은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이용자의 권리로써 인류의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자에게 대출서비스와 상호대차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호대차서비스는 그 과정상 필연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제2항은 도서관 등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판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디지털 자료를 이용자가 요구했을 경우 사서는 협정을 맺은 타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의뢰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도서관 구내에서 타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자료를 컴퓨터화면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격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자판의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사서를 통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여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격교육도서관서비스는 원격지에서 이용자가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서비스가 도서관 구내로 제한되는 것은 전통

적으로 도서관이 수행하여 왔던 서비스를 원격교육환경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상호대차를 통하여 입수한 디지털 자료를 제한된 방법으로 즉, 원격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한 저작물에 대한 제한된 부분에 한정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전송받은 저작물을 이용자가 영구적으로 복제하여 소장하거나 재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와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4.3 전자적 문현전달서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

전자적 문현전달서비스는 도서관이 보유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자 및 피교육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이용하게 된다. 교육자는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필요한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피교육자들은 수업시간 혹은 수업 이후의 시간에 해당 클래스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교육환경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이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대출하여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여 컴퓨터의 화면으로만 보는 것은 저작권법 상 전송⁴¹⁾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송받은 자료를 이용자가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은 복제⁴²⁾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바, 도서관 등은 당해 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는 자료를 전송받을 수 없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라도 도서관 이외의 장소라면 디지털 자료의 전송이 불가능한 것이다. 즉,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도서관 자료를 관외에서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디지털 자료의 원격지 전송은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대출 서비스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대출은 일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빌린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공익을 위해 일반공중에게 정보봉사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마련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전자적 문현전달 서

41)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정의, 9의 2 (전송)

42)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4 (복제)

비스가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료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격지 전송을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즉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키 등을 발부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원격지에서 디지털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 이용을 넘어서 자료를 변형·유통시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헌전달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면 원격교육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만일 학습을 위한 참고자료나 과제에 필요한 자료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이 도서관 면책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전송에 대한 허락을 저작권자로부터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원격교육 참가자들은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물리적 공간의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5. 결론

국내 교육기관 특히 대학에서의 원격교육 도입은 미국 등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존 대학에서 교내 학생들을 위하여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점을 교류하거나 원격대학을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는 원격교육의 활성화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기반의 확충과 그 과정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원활한 접근 및 이용을 전제로 한다.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용과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시킴으로써 저작권법 본연의 목적인 문화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 저작권법 제23조의 2항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전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전송에 대한 권리 제한이 추가되어야만, 면대면 교육환경에서 가능했던 저작물의 이용이 원격교육환경에서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28조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전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특정의 범주 내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제28조에서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규정이 이루어져야만, 비영리교육기관에서 특정 코스의 교육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자료를 축적·접근·전송·다운로드 할 수 있다.

셋째, 원격교육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호대차 서비스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 이루어진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 내에서의 전송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호대차를 통하여 빌린 디지털 자료를 보기 위하여 원격교육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다시 도서관을 방문해야만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원격지에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원격교육 도서관서비스의 본래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대차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원격지에서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28조에서 제한된 수준에서의 전송권 제한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전통적인 교육환경에서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대출하여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격교육 환경에서는 전자적 문헌전달 서비스를 통하여 원격교育과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 관외전송에 대하여 전송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써는 전자적문헌전달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 도서관 관외전송을 통한 전자문헌전달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28조의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시설 내에서의 도서열람을 당해 시설 밖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이광희. “밀레니엄 시대를 위한 교육용 멀티미디어자료의 저작권과 과제”, 《한국정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5권, 제1호(2000). pp. 546-557.
-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10(1999). (<http://kbla.or.kr/hwpDownload/leedaehee.hwp>)
- 이영자, 이연자. “가상대학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2 호(1999). pp. 1-28.
- 정찬모. “디지털 원격교육과 저작권법 :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그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책》 237(1999). pp. 1-13.
- 조영환.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2001. 석사학위논문.
- 한국가상대학연합. 『'98 가상(假想)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서』. 1997. 12. (<http://www.kyungpook.ac.kr/kvu/proposal.pdf> 2001. 10. 4)
- ACRL. *Guidelines for Distance Learning Library Services*. 2000. (<http://www.ala.org/acrl/guides/distlmg.html>, 2001. 10. 4)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Washington Office. *Distance Education Exemption*. 2001. 1
(<http://www.ala.org/washoff/distanceeducation.pdf>, 2001. 10. 18)
- Gasaway, Laura. "Distance Learning and Copyright", *The Journal of Library Services for Distance Education*, Vol. 1, No. 2(1998) (<http://www.westga.edu/~library/jlsde/vol1/2/LGasaway.html>, 2001. 10. 9)
- Jeffres, Michael. "Research in Distance Education", (<http://www.ihtes.org/consortium/ipse/fdhandbook/resrch.html>, 2001. 10. 2)
- Juettner, Diana D'amico and Girasa, Roy J. "Copyright Issues for the Distance Learning Professor", *International Journal of Value-Based Management*, Vol. 14(2001). pp. 109-130.
- Kirk, Elizabeth E. and Bartelstein, Andrea M. "Libraries Close in on Distance Education", *Library Journal*, Vol. 124, No. 6(1999). pp. 40-42.
- Lehman, Bruce A. *The Conference on Fair Use : final report to the commissioner on the conclusion of the Conference on Fair Use*. Washington DC : Office of Public Affairs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998. 189 p.
-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 (the TEACH Act). 2001.
(<http://www.ala.org/washoff/teach.pdf>, 2001. 11. 2)
- The University of Texas. "Fair Use: Reserve Room Operations, Electronic Copies", (<http://www3.utsystem.edu/ogc/IntellectualProperty/l-resele.htm>, 2001. 10. 15)
- U.S. Copyright Office. *Report on Copyright and Digital Distance Education*. Washington D.C : U.S. Copyright Office, 1999.
(http://www.loc.gov/copyright/docs/de_rppt.pdf, 2001. 10. 20)